

---

#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

2023. 8.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목 차

1. 학교폭력 조치사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안내 ..... 1
2.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FAQ ..... 7
3.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사례 .... 10
- [별첨1] 학교폭력 관련 법령 조항 ..... 14
- [별첨2] 학교폭력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례 ..... 17

※ 학교폭력 조치사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안내 파트는 「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내용을 옮긴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문서 참고 요망

# 1

## 학교폭력 조치사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안내

### □ 학교폭력 개념(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예시 상황
신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li> <li>▪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li> <li>▪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li> <li>▪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등</li> </ul>
언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li> <li>▪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등</li> </ul>
금품갈취 (공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이나 옷, 문구류 등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li> <li>▪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등</li> </ul>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li> <li>▪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등</li> </ul>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거나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li> <li>▪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등</li> </ul>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li> <li>▪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li> <li>▪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li> </ul>
사이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등</li> </ul>

##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요

- 학교에서 신고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 발생을 인지한 경우 **사안조사**를 거쳐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학교 내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조치 심의·의결** ⇒ 학교에 통보
  -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변동을 제한함**
  - ※ 단, 학교의 장이 관련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가 미이행 되었더라도 내부결재를 거쳐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 학교폭력 조치사항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조치사항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내용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사과하는 조치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4호	사회봉사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반성하게 하는 조치
6호	출석 정지	출석정지를 통해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 ※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7호	학급 교체	가해학생을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옮겨 피해학생과 격리하는 조치
8호	전학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 피해학생과 격리하는 조치
9호	퇴학처분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 교육부고시(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의 [별표]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내 선도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1~3점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 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 14조제 5항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중할 수 있음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심리 치료		가해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환경 변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판단할 때 해당학교 급내에서 학교폭력 재발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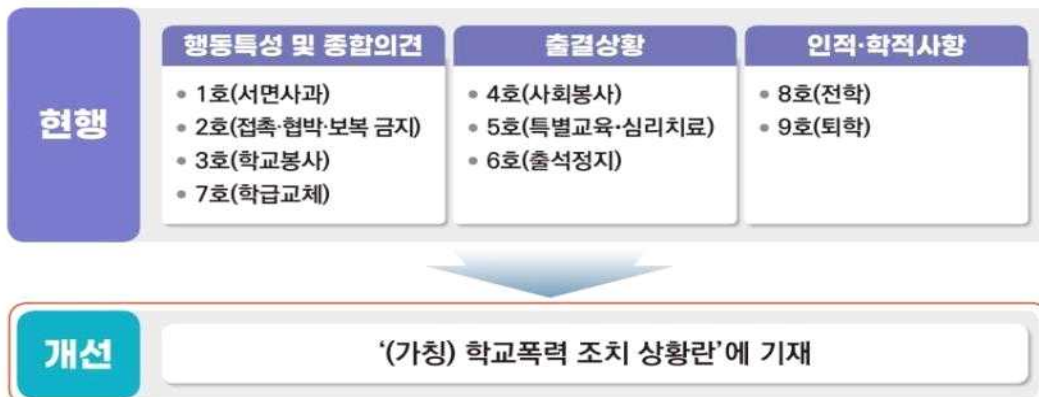
##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방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입력
  - ※ 기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름
-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재된 조치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하며, 향후 조치 변경 및 취소가 확정될 경우 이를 수정함
- 단,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 내 봉사) 조치사항의 경우, 정해진 조치 이행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음
  - ※ 단,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재 유보했던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함

## □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내 기재 위치

- '23년 현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에 따라 조치 사항별로 정해진 기재항목 내 기재 중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등을 통해 모든 조치 사항을 일원화된 기재항목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 ※ 2024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순차 적용, 2027학년도 대입부터 확인 및 활용 가능

###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일원화 방안 >





##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내용 삭제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 수준에 따라 졸업 후 삭제 가능
  - (제1호~제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졸업식 날짜 이후부터 2월 말 사이에 삭제 (졸업 학적 반영 이전에 삭제)
  - (제4호~제7호) 기본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하며,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 (심의 요건)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 심의 시기는 보통 3학년 2학기 말(1월~2월)
  - (제8호 조치)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
  - (제9호 조치) 영구보존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12)」에 따라 2024학년도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는 기록 보존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 예정

###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 >

	현행	개선
1·2·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	
6·7호	•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	• 원칙: 졸업 후 4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
8호	• 졸업 후 예외없이 2년 보존	•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보존
9호	• 영구보존(삭제 불가)	

※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Q1)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특정 전형에서 '지원자격 배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대입 반영 방식 및 기준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전형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격 배제도 가능

※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교과·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 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음. 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Q2)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대입에서 고3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 조치사항별 기재 보존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재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법령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음

**Q3) 지원자 중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유무 확인을 위해 고등학교 학생부를 필수 서류(미제출 시 불합격)로 요구할 수 있는지?**

⇒ 대학이 지원자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유무를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악용을 방지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정고시생에게 고등학교 학생부를 요구하는 것이 대학의 재량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대학의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음

**Q4) 모집별 학생부 마감일 이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대입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 ⇒ 입학전형 절차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학생부 상의 기록을 반영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종 시점을 언제로 결정할 것인지는 대학의 재량 사항임
- ⇒ 즉,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및 조치사항 반영 여부는 각 대학이 재량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 다만, 특정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별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음

**Q5)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등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대입에 반영해야 하는지?**

- ⇒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조치결정 통보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대입전형자료로 접수한 학교생활기록부로 대부분 확인 가능함
- ⇒ 소송 등으로 인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변동되는 경우 변동 사항을 반드시 대입전형 결과에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별 적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 대학의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음

**Q6) 대입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 또는 범죄 경력을 대입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 ⇒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근거법의 규율 목적 및 대상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또는 범죄 경력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움
- ⇒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자료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근거한 고등학교 내 교과·비교과 활동 평가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이 필요할 것임

- ◆ 아래 사례는 대학의 전형 운영을 돕기 위한 예시이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대학에서 정할 수 있음

### □ 지원자격 제한

- 전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자격을 제한

#### 사례 1

##### ■ 학교장 추천전형(고교추천전형) 및 서류평가 전형(학생부종합전형, 예체능서류전형, 특기자전형) 학교 폭력 관련 사항 반영 방법

- 학교장 추천전형(고교추천전형): 지원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반영함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됨
- 서류평가 전형(학생부종합전형, 예체능서류전형, 특기자전형): 해당 전형 서류평가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함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본교 입학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서류평가 총점에서 감점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음

#### 사례 2

- ▶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 ※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사항(제4호~제9호)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의 고등부 선수로 등록되어 있으며,
  - ※ 야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 축구: 대한축구협회,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 농구: 대한민국농구협회
- ▶ 다음 종목별 어느 하나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 ※ 다만, 입학 후 즉시 우리대학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사례 3

### 4.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 지원자격 증빙서류 등 공통서류 미제출자, 경기실적 지원자격 부적격자, 면접평가 불참자는 입학전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본교 체육특기자 선발·연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입학전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사실"이 기재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본교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형 제외 또는 감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형 제외'는 불합격 처리를 의미

## □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점수 차등적용

- 학교폭력 조치사항 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점수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에 정량적으로 반영, 구체적인 감점 기준은 전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함

사례 1

구분	조치 사항	심의 기준(안)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감점 없음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감점 없음
3호	학교에서의 봉사	감점 없음
4호	사회봉사	서류평가에서 1등급 강등 또는 수능성적에서 1점 감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서류평가에서 1등급 강등 또는 수능성적에서 1점 감점
6호	출석정지	서류평가에서 1등급 강등 또는 수능성적에서 1점 감점
7호	학급교체	서류평가에서 1등급 강등 또는 수능성적에서 1점 감점
8호	전학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 부여 또는 수능성적에서 2점 감점
9호	퇴학처분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 부여 또는 수능성적에서 2점 감점

- ※ 서류평가 반영 전형 :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 수시 일반전형, 수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정시 기회균형선발전형II
- ※ 수능성적 감점 전형 : 정시 일반전형

사례 2

조치사항	감점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0점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0점
3호(학교에서의 봉사)	0점
4호(사회봉사)	3점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3점
6호(출석정지)	5점
7호(학급교체)	5점
8호(전학)	20점
9호(퇴학)	20점

- ※ 수능반영 총 점수 기준(만점): 1,010점

### 사례 3

< 학생부 위주 전형 반영 (안) : 교과 평균 등급에서 감점 >

조치사항	감점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0~0.1 등급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0.3등급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0.5등급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0.7등급
7호(학급교체)	
8호(전학)	1등급
9호(퇴학)	

< 수능 위주 전형 반영 (안) : 수능백분위 400점 만점에서 감점 >

조치사항	감점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0~1점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점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점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점
7호(학급교체)	
8호(전학)	10점
9호(퇴학)	

### 사례 4

조치사항	감점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점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2점
3호(학교에서의 봉사)	3점
4호(사회봉사)	4점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불합격 (위원회 논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 □ 정성평가로 반영

- 전형 내 특정 영역(예 : 공동체 역량, 도덕성) 평가 시 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성적으로 반영

### 사례 1

#### ◆ 학생부 종합 전형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서류평가 시 정성평가로 반영

### 사례 2

#### 1. 서류평가대상 전형

-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면접)전형, 지역인재종합전형, 평생학습자전형, 성인학습자(정원내외)전형, 재직자전형, 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

#### 2. 서류평가 방법

- 고교 재학 중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공동체역량, 학업역량, 전공적합성을 정성·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3. 서류평가 영역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영역	공동체역량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평가요소	협업능력	학업태도 / 학업성취	열정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목표를 위한 협력적 태도</li> <li>• 나눔과 배려</li> <li>• <u>학교폭력여부*</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에 대한 흥미 및 주도적 노력</li> <li>• 수업시간 적극적 참여</li> <li>• 학업에 대한 성취정도</li> <li>• 학년별 성적추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전공(계열) 관련 활동과 경험</li> <li>• 지원전공(계열) 관련 학업의지</li> <li>• 학교생활의 적극적 참여</li> </ul>
전형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인적·학적사항, 창의적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결상황, 창의적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포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포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전형자료의 유의미성	① 학생 개인의 노력 ② 학생 개인의 노력에 대한 교사의 평가(학생 개인의 노력이 없는 교사의 관찰과 평가는 서류평가에서 배제) ③ 교사의 평가와 그 근거		

\*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폭력 조치내용의 정도에 따라 공동체역량 영역에서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함

##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후략)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로 구분해 작성·관리한다. 이 경우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는 학생의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제1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작성·관리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1.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
2.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



##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후략)

❖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 소년법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헌법 제31조제4항), 대학은 응시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 스스로가 정한 합격·불합격 처리기준에 따른 합격·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이 입학지원자를 선발할 때에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에 따라 합격·불합격 판정을 하는 것은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마622 전원재판부 결정

평등권에서는 '차별취급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차별취급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가'의 2단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평등권은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2헌마630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비록 경미한 조치라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의 기재 및 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관련 조항들에서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활용목적의 확대 및 남용에 따른 부수적인 기본권침해도 방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 생활보장 및 학생보호라는 공익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학생이 입게 되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그 보호가치가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징계조치 조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재되고 있으나, 졸업과 동시에 그러한 조치 내용을 삭제하거나 적어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를 삭제함으로써 졸업 후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계속되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다. 실제로 현행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4항, 제5항에는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학교폭력예방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가해학생이 진급이나 진학에 있어 지나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조치조항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전원재판부 결정

물론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받게 되면 그 조치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불이익이다. 또한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적절한 의견진술 기회 등 절차적 기회를 제공한 뒤에만 서면사과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소속 학교에 따라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다.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은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가해학생에게 요구되는 사과이므로, 가해학생의 양심이나 인격권에 지나친 제약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서면사과 외에도 경고나 주의 또는 권고적인 방식으로 충분히 동일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장시간 머무는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문제가 가해학생의 반성과 사과 없이 단순히 가해학생에 대한 주의나 경고, 권고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고 이를 피해학생에게 사과함으로써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단순히 학교폭력에 대한 주의나 경고 또는 권고적인 조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교육적 조치이다. 결국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은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과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